

아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조정·정산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
제도 설명 영상

I 2022년 9월 시행된 소득 정산제도란?

- 2022년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**보험료 조정 기준을 강화** 하고, 우선 조정 후 정산하는 **소득 정산제도를 도입**하였습니다.
 - 근거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의2, 제42조 제2항
- 소득 정산제도란, 소득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해 11월 국세청 연계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것을 말하며,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산 차액은 11월에 추가부과 또는 환급합니다.
- 따라서,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연간소득보다 올해 연간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라며, 이미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계산하므로 소득이 줄어들었더라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- 근거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 제3항(1~10월은 전전년도 소득자료로, 11~12월은 전년도 자료로 산정)

II 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

- 조정가능 소득은 **사업소득과 근로소득**이며,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한 종류로 조정을 받더라도 정산 시에는 **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**하여 재산정합니다.
 - 근거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의2 제1항, 제3항
- **조정된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, 조정 적용 연도의 전체 기간(1~12월)을 정산**합니다.
 - (예시) 2023년 3월 조정 신청 시, 신청 다음 달인 2023년 4월분 보험료부터 조정되며, 2024년 11월에 확보된 국세청 확정소득(2023년도 소득)으로 2023년 1~12월분 보험료를 재산정
 - 확정된 소득으로 재산정한 정산보험료는 재조정 불가
 - 정산 이후, 해당 귀속분 소득이 경정될 경우 추가 또는 환급 보험료 발생할 수 있음
- 조정·정산 **취소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**하고, 소득정산 보험료 산정 이후에는 취소 불가능합니다. 소득 조정 시 보험료 정산신청은 필수 절차로, 조정신청 없이 정산을 받을 수 없으며, 조정신청 이후 정산만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.

III 제도 관련 유의사항

-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.
-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, 보험료 감면을 받은 경우 및 보험료 기준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(본인부담상한제,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등) 소득 보험료 정산 시 **취소 및 환수**될 수 있습니다.